

이천시온천수급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1997. 4.
제출자 : 이천시장

 제안이유

온천법 개정에 따라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시장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사유온천공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직접 공동급수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온천수 사용료는 시로부터 허가받은 온천수이용자 및 업소가 부담하되, 온천수 사용요금중 기본요금을 200세제곱미터이하 사용시 시유공은 50,000원, 사유공은 40,000원, 초과요금에 대하여는 200세제곱미터초과 사용시 1세제곱미터당 시유공은 300원, 사유공은 250원으로 하여 부담하도록 함(안 제9조).
- 다. 온천수의 사용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급수정지기준 등을 정함(안 제12조).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온천수급수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온천수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천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온천수의 공동 급수와 이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유온천공"이라 함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온천공을 말한다.
2. "사유온천공"이라 함은 개인(또는 법인) 소유의 온천공을 말한다.
3.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배수관 또는 유량계 등을 말한다.
4.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를 신설·증설·수리·폐전 등의 행위를 말한다.
5. "수문관측시설"이라 함은 수위측정장치·유량계·온도계 등을 말한다
6. "온천수사용자"라 함은 급수장치 수문관측시설의 시설자·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공동급수) 시장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사유온천공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직접 공동급수한다.

제4조 (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지구안으로 한다.

제5조 (급수대상)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공급계약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온천수의 이용용도 및 사용량
2. 온천수의 공급위치 및 이용업소
3.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온천공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수공급계약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7조 (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온천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비용은 신청인(사용자)이 부담한다.

② 온천수 이용에 관련된 시설물·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 수중모터, 전기등은 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제8조 (업종의 구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수의 이용허가를 받은 업종으로 한다.

제9조 (사용료) 온천수 사용료는 시로부터 허가받은 온천수이용자 및 업소가 부담하되, 별표 1의 온천수 사용 요금표에 의한다.

제10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의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4.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②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은 당월기준 이전 2월분을 평균하여 인정한다.

제11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온천수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정지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수수료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공사비 등의 납부금을 납기경과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사용허가량을 초과사용한 자와 급수장치를 승인없이 변경한 자

3. 급수를 도용한 자

4. 온천수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온천수를 판매한 자

6. 온천수를 타 용도로 이용한 자

7.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의 급수정지 기준 등은 별표 2에 의한다.

제13조 (이의신청) ① 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가산금 기타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동조례 제35조의 급수장치 손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공급계약 체결 및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온천수사용요금표(제9조관련)

구 분	요 금	기 본 요 금		초 과 요 금	
		사 용 량	사 용 료	사 용 량	사 용 료 (1m ³ 당)
숙박	시비개발공 (시유공)	200m ³ 이하	50,000원	200m ³ 초과	300원
욕용	기부체납 시 유 공 (사유공)	200m ³ 이하	40,000원	200m ³ 초과	250원

[별표 2]

급수정지기준등(제12조관련)

위반사항	급수정지				비고
	1차	2차	3차	4차	
1. 제12조제1항제1호	3일	7일	15일	계약해지	
2. 제12조제1항제2호	3일 또는 추징				추징은 사용금 의50% 증액
3. 제12조제1항제3호	3일 또는 추징				
4. 제12조제1항제4호	3일 및 추징				
5. 제12조제1항제5호	3일				
6. 제12조제1항제6호	급수정지 일수의3배				
7. 제12조제1항제7호	1일				

온천수 공급계약서

계약종별	공급최대사용량
	m'/일

이용업소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이 천 시

온천수 공급 계약서(시유·사유)

온천수 공급자

주 소 : 이천시 중리동 187-1

성명(상호) : 이 천 시 장 ("갑"이라 함)

온천수 이용자

주 소 :

성명(상호) : ("을"이라 함)

위 갑·을 양자간에 온천수 공급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체결의 증거로 본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을 보유한다.

제1조 (온천수의 이용용도 및 사용량) "을"은 온천수를 목욕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일일 최대 사용량은 m'이하로 한다.

제2조 (온천수의 공급위치) 온천수의 공급 지점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3조 (온천수의 사용장소) 온천수의 사용장소는 이천시 읍·면·동 리내로 한다.

제4조 (공급시설설비) "을"은 온천수 공급을 받기 위하여 급수시설 전반에 대하여 냉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량 검침) "을"이 매일 사용한 온천수의 검침은 매월 말일에 "갑"이 시행한다.

제6조 (사용료) 온천수의 사용료 등은 이천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에 한한다.

제7조 (공급의 정지 및 제한)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온천수 공급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공사상 필요한 때
2. 온천수공동급수조례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일시 사용량이 증가하여 제한 공급이 필요한 때
4. 목욕수 이외에 사용할 때
5. 기타 “갑”이 온천법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온천법 또는 이천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와 이천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99 년 월 일

위 “갑” : 이천시 중리동 187-1

이 천 시 장

위 “을” :